

문서관리번호	HPK-A-020
최초 제정일	2023.01.02
최신 개정일	2023.01.02
문서 관리자	인사총무팀

희 성 측 매 인 권 헌 장

1 제정목적

희성촉매주식회사는 촉매기반 친환경기술 선도기업으로서 기업활동 전반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중요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임직원, 파트너, 고객, 협력업체 및 지역주민 등 관련된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존중을 통해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한다. 희성촉매(이하 '회사'라 함)는 인권경영을 적극 이행함과 동시에, 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등을 최소화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제정한다. 회사는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 헌장(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nstitution),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아동권리 협약 등 인권, 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지지한다.

2 적용범위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회사의 임직원으로 한다. 또한,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회사의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3 기본원칙

3.1 차별금지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인종, 성별,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임신 및 출산,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든 임직원을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3.2 근로조건 준수

회사는 국가가 법규에서 지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최저 임금 및 생활 임금을 보장하여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지급한다. 또한, 사회보험 가입, 휴게시간 및 휴가 제공 등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하며, 임직원에게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3.3 인도적 대우 및 괴롭힘 금지

회사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 등을 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임직원에게 대한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정서적 괴롭힘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3.4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회사는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관계법으로 보장되는 임직원에게 대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인정하고, 회사와 원활히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을 경우 인정)

3.5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임직원 자유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근로도 강요하지 않으며,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및 지역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기준을 준수한다. (※아동 노동 금지 정책 참조)

3.6 인신매매 및 착취 금지

회사는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 사용 등 강압, 납치, 사기 또는 기만 등의 수단으로 인력을 모집, 수송, 이동, 은닉 또는 수령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3.7 생활임금 준수 및 복리후생 제공

회사는 법규에서 보장하는 최저임금 지급에서 나아가,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유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임금 지급과 복리후생 지원 원칙을 준수한다.

3.8 산업안전 보장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회사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별도의 안전장구를 제공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국가 및 지역의 법규가 요구하는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

3.9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회사는 주요 거래처,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며, 필요한 경우 거래처 및 협력회사의 인권경영 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회사의 인권경영에 크게 반하는 사항 발생 시 거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10 지역주민 인권 보호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지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3.11 고객 인원 보호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각종 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3.12 환경권 보호

회사는 국내외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3.13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법규에 의거하여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당사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4 인권 리스크 관리

회사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에 따라 인권 경영 실행에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수립하고, 인권경영 담당조직 또는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4.1 인권침해 신고·접수

■ 인권침해 신고 채널

- 부서명 : 인사팀
- 이메일 : jk.kim@hscatalysts.com
- 전 화 : 02-3709-7750
- 팩 스 : 02-752-4436
- 우 편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41 영풍빌딩 18층
- 홈페이지 : www.hscatalysts.com → 지속가능경영 → 컴플라이언스 경영 → 희생신문고

4.2 인권침해 신고 처리

회사는 인권침해 신고 사례 등에 대해 최선의 구제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며, 인권침해 사례가 피해자의 자유와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회사의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임원회의에서 논의한다.

4.3 신고인 익명성 보장

회사의 주관부서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되며,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4 주관부서는 임직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회사의 인권 경영 추진내용에 대한 공유 목적 등으로 필요 시 인권경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5 시행일자

5.1 본 인권헌장은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